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2조, 제3조)

- 1)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서 및 신고접수증 서식을 규정함
- 2)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안 제4조)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안 제5조)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바. 임시기준 신청서(안 제10조)

임시기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일반 현황

2.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 개요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② 전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협회의 설립인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계획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접수

처,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 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2. 지원센터 현황
3. 사업추진계획
4. 운영 및 사후관리

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시기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
([]신규 []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홈페이지 주소:)	② 설립일	년 월 일
	③ 대표자의 성명	④ 대표자의 연락처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근로자 수	
	⑦ 기업 규모별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⑧ 사무소의 주소		
⑨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주요 내용		
⑩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전자우편	
⑪ 변경사항	[]사업자의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가상융합플랫폼서비스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향후 거짓 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가상융합법산업 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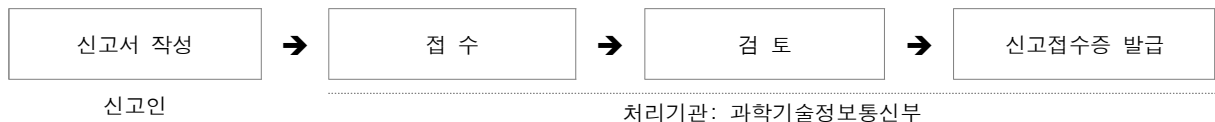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신고서 선택 : 최초 신고는 신규란에, 변경 신고는 변경란에 체크합니다.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를 모두 적습니다.
- ④ 대표자의 연락처 : 대표자의 사무실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 근로자 수(대표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 ⑦ 기업 규모별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 ⑧ 사무소의 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⑨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 개요 :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⑩ 담당자 :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 ⑪ 변경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접수번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접수증

1.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 :

3. 사무소 주소 :

4. 서 비 스 명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작 인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이내	
사업명				
주관기관	국문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과제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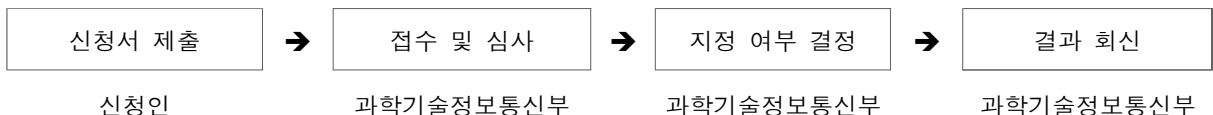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 지정 []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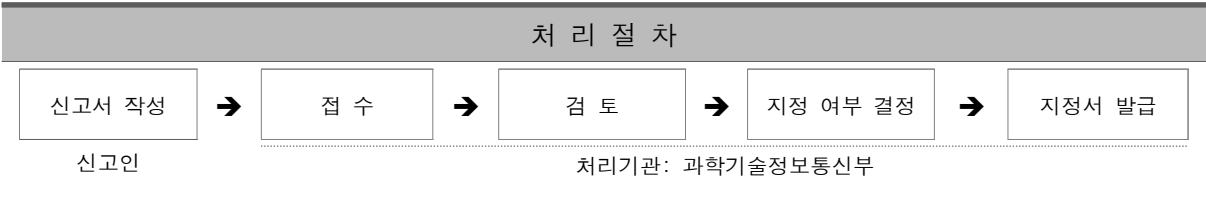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나. 시설명세서 다.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라.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소재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작 인

임시기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안자	회사명 또는 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 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임시기준 제안 개요	명 칭		
	주요내용		
	관련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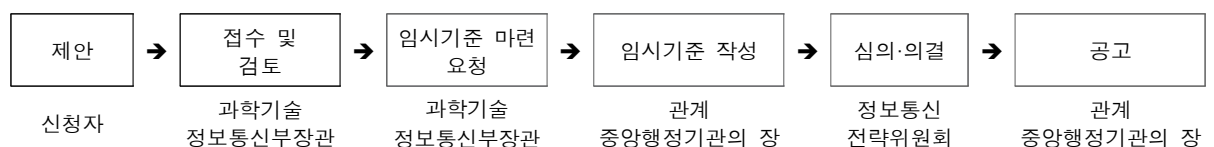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 가.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나. 임시기준의 적용범위 다. 임시기준의 제안 이유 라.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마.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